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8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7. 24(금) 14:00 ~ 19:16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진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정유란 위 원
 조기숙 위 원
 홍태림 위 원

1. 성원 보고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논의 안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7개의 의결안건과 10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안건을 처리한 이후에는 예술인 성희롱 사태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문 발표와 흥태림 위원님께서 발제할 예정인 청년참여 확대 방안 논의의 건과 관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여부를 사무처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12인 위원 중에서 현재 10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2. 개회 선언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 결과를 사무처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3페이지를 보시면 281차, 282차의 회의결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6월에 개최된 281차 회의에서는 3건의 의결안건 중에서 보고사항으로 대체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안의결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대체되었던 코로나19 대응 공연관람료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은 오늘 의결사항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면 개최된 282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사무처장이 전차(前次) 회의 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첫 번째 의결안건은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이 건은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안건번호 제 831호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이 지난 6월 9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9월 10일 이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관 개정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페이지 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6월 9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위원장을 호선제로 임명하는 사항 그리고 위원 임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원 위원장 및 위원 발생 시 신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정관 및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규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이번에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의결을 거치고 이번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 내용은 첫 번째가 위원장 호선제 도입입니다.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을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위원장은 3년, 위원은 임기가 2년에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궐 위원장 및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위촉된 날로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남은 임기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 자리를 직무대행 하는 위원이 보궐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 임명권한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자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31일자로 저희 위원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사항 중에서 배제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선임 비상임이사 조항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에서 적용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운법을 적용하던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선임 시까지의 직무수행 근거 및 임원 결격 사유를 명문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위원장과 감사에 대한 절차였는데요. 위원장 호선제 도입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임감사 후보자 추천에 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사 후보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후속조치 사항으로는 위원회 의결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으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6조의 사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제6조 2항에 포함되었고 그에 따라서 자구사항의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임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바뀌는 부분이고, 제 6조의 1에서 임원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감사에 대해서 하던 것을 감사에 한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6조의 2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12조의 사항을 이쪽으로 옮겼고요. 법 규정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 27조에 따라 1호, 2호, 3호, 4호를 적용했고요. 법과 문화예술진흥법, 공공운영법에 따라서 2항과 3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7조 임원의 임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법에 따라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7조 4항에서 보궐위원장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감사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새로이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여기에서 임원이라고 함은 위원장, 감사, 위원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 25조와 공운법 제 27조 5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9조는 위원장이 궐위 되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은 지체 없이 보궐위원장 선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10조의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이사회로 보고 위원장으로 호선된 위원은 이사회 의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2조는 앞의 6조 1호, 2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제 14조 2항을 보시면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운법 제 35조에 근거해서 직무상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불이행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3항이 1호, 2호가 있습니다. 3호에 대해서는 공운법상의 규정을 4호, 5호, 6호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4호, 5호, 6호는 공운법에 대해서 준용한 부분이 있고 다른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4호 같은 경우에는 “위원 간 분쟁,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현저한 부당 행위를 한 경우” 이 부분은 다른 기타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사례들을 가지고 적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에도 법에는 없지만 다른 공공기관에 있는 사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입니다. 6항은 공운법 제22조와 관련된 조항을 가지고 인용한 것입니다.

정관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나 감사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이 호선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감사의 선임절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장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감사로 일원화 시키는 부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은 4조 2호와 같이 삭제할 부분은 삭제 하였습니다.

8조 부분은 감사에 대한 자격기준인데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31일자로 개정되었는데요. 감사후보자의 자격요건이 8조 1항에 신설된 것처럼 1호, 2호, 3호, 4호, 5호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를 추천할 경우에도 이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제외하고 감사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의 11보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12조는 위원장과 관련된 사항이라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이 규정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듯이 위원장 호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제도 정비 차원의 위원회 정관 개정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호선이잖아요? 그런데 제 9조에 위원장의 직무 대행 항목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 보궐 위원장 선출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라고 복잡하게 쓰셨는데요. 이게 호선이면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위원들 사이에서 다시 호선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이것은 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위원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연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체 없이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위원장 절차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요. 바뀐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호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간단하게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직무대행 절차를 복잡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장을 대행하시는 분에게 빨리 진행시켜서 위원장을 빨리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별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로 회의체라는 것은 한 달에 한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결재 등 직무대행 형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호선 절차에 있어서 사회자를 누가 하느냐?” 정도입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또 하나 예를 들면 회의가 늦게 소집되었을 때 사무처의 급박한 일인 경우에는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위원장 대행을 하시는 분이 선임절차를 빨리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빨리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선출 감사

-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권위 시 대행은 연장자순으로 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예.

○유은선 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7조 5항에 “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수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임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임원이라고 하면 위원장, 감사, 위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위원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운법에는 ‘임원’은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은 코로나19 대응관련 미술전시관람료지원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이윤희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17페이지입니다.

안건번호 제832호 미술전시관람료지원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의결주문은 미술전시관람료지원사업 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시 등이 많이 중단되었고 어려움 속에서 미술전시·관람 소비의 회복과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접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보조사업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입니다. 주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전체 52억입니다.

미술전시관람료 할인권은 48억이고 실제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관리체계 개발·운영, 홍보 관련해서 사용하는 운영비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전략을 보시면 2가지 용도로 사업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이 쉽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채널(카카오톡)에서 할인쿠폰을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매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1~3천 원 정도의 할인을 적용하여 추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4,000원 이상이면 3,000원 그리고 4,000원 미만의 전시라면 1,000원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쿠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하면 온라인에서는 전국단위 전시 관람권을 대행 하는 판매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4~5개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파크,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상에서는 국·공·사립 미술관 및 전시공간, 전시행사 등으로 340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용 방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부정수급 및 중복사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활성화 부분은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 시각예술 행사나 축제와 연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 연계 부분을 보시면 박물관미술관주간, 공예주간, 미술주간 등과 연계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매처나 전시기관 등과는 이미 두 차례 정도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바탕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나 사전 교육 등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일반국민)에 대해서는 웹 진단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립 위원

- 공연관람료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정사용 방지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미술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얘기만 있고 상대적으로 공연에 비해 부정사용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검토가 되었나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오프라인 관련해서 문제는 카카오톡으로 1인당 10매 혹은 5매로.....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갔을 때는 그것을 보여주고 QR코드와 같이 거기에 맞춰서 관람료 할인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제된 것들을 보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액 자체는 1인당 최대 3,000원이고 최대 20매 정도의 할인쿠폰을 한 사람당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6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공연과 같이 금액이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정사용이 높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을 통해서 할인권을 발행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전시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온라인 결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다시 또 발급을 받아야지만 완전하게 티켓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만 결제한 것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원재 위원

- 카카오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카카오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 채널을 활용하는 것입니까.

○이원재 위원

- 다른 관계없이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번호 831호 코로나19 대응관련 미술전시관람료지원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세 번째 의결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이 건은 이종국 공연기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회의자료 41페이지입니다.
지난 6월 24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에 문체부 공연과장과 3자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여러 얘기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눈 가리고 아웅처럼 현장 의견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그에 따라서 5월과 6월에 보고를 드린 내용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솔직한 저희 담당부서의 입장으로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내용과 더불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공연예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객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견인차가 될 것인지에 대한 중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3자 회의를 마치고 나서 7월 6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르쿼터 도입에 대해서, 특히 무용과 전통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처음 현장 의견수렴에서는 “1% 정도는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다가 2% 얘기가 나왔고 저희한테 기본계획을 보내왔을 때는 은근슬쩍 숫자 ‘2’를 빼고 왔는데 저희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정사용과 관련해서도 QR코드나 모바일 확인제도와 같은 현황들이 실제로 가능한가? 지금 예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티켓 예매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요 예매처 관련해서 설명회와 이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예정 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못 하겠다고 하는 데는 없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특히 영화관람료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인데 하반기에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대작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빨리 결정을 해 달라.” 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지원혜택과 관련해서 산술적으로 총 9만 6,000원 정도의 할인혜택에 대한 변경은 없는데요.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누가 8,000원을 지원 받으려고 회원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하겠느냐?” 그런 입장을 문체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만 6,000원은 유지를 하되 1인당 4장씩 3개월에 걸쳐서 쓸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단위로 보고를 받아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 개시는 9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서 10월 실제로 점검을 해 보고 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뒤에 있는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41페이지 기존(안) 대비 바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통해서 원안이 조금 더 숙성되었으면 합니다.

○박경주 위원

-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보완이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감사합니다.

○유은선 위원

- 아까 쿼터 관련해서 %는 아직 예경과 결정된 것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내용의 핵심이 “보다 제대로 된 제도로 작동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과 동일하게 전통과 무용 장르에 대한 쿼터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보장제 같은 것들이 작동되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1% 애기가 나왔다가 예경 측과 7월 3일 회의 할 때는 2% 정도로 하는 회의자료가 있었는데요. 저희에게 기본계획을 보내올 때 %가 빠져 있던 상태입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정해 주시면 저희가 교부조건에 그것을 달아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유은선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정하면 되는 건가요? 원래 제안을 했던 게 2%였죠? 그렇게 아예 교부조건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2% 정도면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었죠. 원안이 2% 정도였는데 오늘은 확정짓지 않고 9월에 실제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적절한 범위를 정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2%로 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누군가가 그 티켓을 구매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어쨌든 관람료 지원이 일반 시민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1.89%로 기억을 합니다. 그랬을 때 1%이기 때문에 2%로 조건을 걸어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단, 제일 마지막에 남으면 다른 장르가 쓸 수 있도록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국 공연기반부장

-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공연관람티켓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전통과 무용 쪽은 단체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느 경우라도 최소보장제는 부양책이죠. 그런데 2%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최하 2%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논의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부분이 실종되지 않았다는 의미 확인, 내용의 확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대로 안전번호 제 833호 코로나19 대응 공연예술관람료지원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네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 정책혁신 소위원회 위원구성(안)입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안건번호 제 834호 2020년 정책혁신 소위원회 위원구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추진경과를 보면 278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1차 구성(안)이 정리가 되었고 281차 전체회의에서 토론안건으로 상설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책혁신 소위원회, 현장소통 소위원회, 성평등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각각 추진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

이후 7월 3일에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방향과 역할, 주요 아젠다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운영방향 이하의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의 운영목적은 예술지원체계에 대한 진단과 공론화를 통해서 예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7월 3일 논의안건으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은 새예술정책, 아르코혁신TF, 아르코 비전2030, 7기 위원회 워크숍 TF제안, 7기 위원회에 바란다 등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2차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게 조직분야와 사업분야, 기타 분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조직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자료는 회의록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예기금의 위기극복을 위한 안정적 재원정책마련, 대외협력 확대 및 위원회 위상강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업 분야 측면에서는 예술가치 확산, 인력육성체계,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계 공정환경 조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타 사업혁신 TF나 현장소통소위원회 등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8월에 저희가 예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나 지원체계 진단을 통한 내용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9월에는 전략 설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10월 말에 예술포럼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TF나 사업혁신 TF 그리고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 나열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 위원 구성(안)입니다.

현재 내부위원으로는 이원재 위원님, 박경주 위원님, 정유란 위원님, 조기숙 위원님 등 4인이 참여를 하시기로 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6인입니다. 표를 보면 김상철, 성연주, 성지수, 양혜원, 정윤희, 최도인 등 6인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내부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몇 분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6인으로 해서 10인으로 출발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임기는 저희가 아직 규정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정책혁신 소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께서는 의결한 내용을 갖고 다음 위원회 때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소위원장 임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 5조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자료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책혁신 소위원회 의결안건으로 보고드릴 내용과 같습니다.

○유은선 위원

- 우선 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 중에서 7명이 문화일반 쪽이세요. 그리고 2명이 연극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술장르, 현장의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장르를 다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면 저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현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문화일반으로 쏠렸기 때문에 자칫 우려 사항이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장님이 결정된다고 하면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취약한 부분을 서둘러 보강했으면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정책혁신 소위원회는 어찌 보면 정책적인 안건을 얘기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문화일반에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분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할 때도 문화일반 중에서도 장르베이스가 있는 분들, 지금은 활동을 문화일반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 위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문화일반으로 장르가 분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현장소통 소위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거기는 장르와의 연계 때문에 장르에서 한 두 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의제들을 사실 정책 소위에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하면 되는 거라서 약간의 역할분담이 돼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위원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책혁신을 얘기할 때부터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이원재 위원님이 맡아 주셨다고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원재 위원

- 문화일반 관련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10인 중에서 문화일반 표현도 애매한데요. 정윤희 선생님도 시각예술작가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저를 빼고는 모두 장르예술을 하시는 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소위원회의 특성상 문화일반으로 쏠려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유은선 위원님께서 책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 참여 하시기로 했잖아요?

○유은선 위원

- 그게 아니고요. 사실 현장소통 소위원회 등 2개가 상설로 가기로 한 것인데요. 저는 원래 참여를 했다가 내부위원들이 너무 많은 게 좀 그렇다고 했고, 후에 조기숙 위원님이 참여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제가 빠지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빠지겠다는 의사를 냈던 것은 아닙니다. 조기숙 위원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막으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그냥 유은선 위원님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원재 위원

- 잠시만요.

○박경주 위원

- 저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원재 위원

-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경주 위원

- 제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원재 위원

- 말씀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제가 회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문제 제기의 핵심은 이른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 이라고 하는 것이 장르별 지원정책이 포함될 텐데요. 장르 쪽의 의견을 반영할 구성으로 되지 않은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반론이 2가지로 나왔죠. 하나는 “장르 장치로는 이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의 연계 문제에서 현장소통 소위원회와 정책 의제로 넘어가는 시스템을 볼 때 그 쪽에서 의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해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이원재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태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박경주 위원

- 제 얘기가 안 끝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모두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박경주 위원님께서 누가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경주 위원

-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카톡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정책혁신 소위원회 카톡 내용에 대해서 유은선 위원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그 내용을 못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기숙 위원님과 유은선 위원님이 나눠서 하시기로 한 것은 저희 내부위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외부위원을 뽑는 것도 만나서 했으면 제일 좋았는데 저희가 일정상 카톡으로 하게 되니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내부위원이 몇 명이냐를 정하는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면 좋은데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유은선 위원님이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얼굴을 보고 서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유은선 위원님께서 조기숙 위원님이 그만 두시게 되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그냥 들어오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도 거기에 속해 계시니까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유은선 위원

-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빠지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 외부위원을 1명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문화일반이 많기 때문에 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1명 정도는 그런 쪽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대해서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카톡방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에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논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일이니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유은선 위원님은 위원이기 때문에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를 하시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장르나 전통예술이 아니고 지역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판단하시고 위원을 추천하셔야지 누가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유은선 위원님은 당연히 위원이시니까 참여를 원하시면 참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판단의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명확히 드러나는 게 장르가 아니고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논의하고 추천을 하셔서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위원들의 참여를 자제하자는 발언을 제가 하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저는 참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톡방에서 그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진행된 상황은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제안했던 것은 저희가 소위를 구성하다보면, 특히 이번에 만들어진 상설 소위들은 2주에 한 번씩 모임 수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밀도 있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위들만 상설 소위로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외부위원을 처음 추천할 때는 7인이었어요. 7인과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해서 12인이 논의를 하게 되면 회의시간을 잡는 것부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 소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행정적인 작업을 하면서 저희에게 필요한 의제들을 만들어서 전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 의견은 참여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위를 2개 하게 되면 2주에 한 번씩 하면 한 달에 4번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전체회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제안을 드렸던 이유는 정책 소위에 모든 장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준비해서 그 의견을 저희 위원회에 넘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가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유란 위원

- 저는 일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칙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논의에 참여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솔직히 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위원의 비율과 외부위원의 비율을 꼭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냐는 위원님들 컨디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소위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본인이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다면 저는 사실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내부위원들이 충분히 참여하고 그 외의 보완할 수 있는 영역들을 외부위원들이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부위원을 추천할 때 “청년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을 짚어서 추천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논의 자체는 열고 시작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작년에 소위를 했던 입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논의가 진척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10개 소위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고 끝낸 소위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정유란 위원

-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7기 위원이 되고 나서 굉장히 억울한 게 “6기 때는 이랬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7기는 아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래.”, “그때는 그랬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것에 의해서 위축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러했으니

그런 줄 알아라.”라고 하시면 조언을 듣고 따라야 하지만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런 의미보다 지금 논의하는 것은 보다 바람직한 소위원회 구성안인데요. 결국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면 소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활동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위원회는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은 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의안 중심이고 빠른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게 적당한 범위여야 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다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소위원회겠어요. 어차피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로 꾸리는 것이 적절한 것인데요. 지금은 적절한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님이 안 계실 때 조기숙 위원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안 계실 때 이야기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

- 어떤 내용인가요?

○박경주 위원

- 사실 소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위원을 추천하고 그 안에서 위원장을 뽑는 것은 사실 카톡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톡에서 누가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유은선 위원님께서는 전통 분야도 1명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카톡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카톡에서 한 것은 정식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은선 위원님이 얼굴보고 같이 회의를 할 때 한번 더 논의하기로 요청하셨거든요. 전통분야 1명을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은선 위원님이 들어오셔도 커버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중이었어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63페이지에 회의록을 첨부했습니다. 이날 유은선 위원님 빼고 6인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정책혁신 소위원회 외부위원 구성 논의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내부위원이 몇 분 오시는 것도 제한이 없고 외부위원도 몇 분이 오시는 것도 15인 이하면 제한이 없는데요. 저희가 계속 10인을 얘기한 것은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효율성 관점에서 이정도 숫자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단 정책혁신 소위원회는 예술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미래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아르코 혁신 TF나 아르코비전2030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던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인력풀을 구성할 때 굳이 따지자면 문화일반이라는 카테고리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이지만 세부단계로 들어가면 기획, 전략 등 다양한 관점 측면에서 여러 분들이 계신 겁니다. 물론 다 모시면 좋겠습니다만, 그때도 분명히 장르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7월 3일에는 “현장의 지식이 부족하면 필요할 때 자문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들으면 되겠다.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장 목소리보다 정책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를 하신 겁니다.

○유은선 위원

- 당사자의 한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회의 자료를 받고 “내가 이것을 한다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왜 들어가 있느냐?” 라고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현장소통과 예술정책을 같이 하면서 양쪽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유란 위원님이 들어갔다가 제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조기숙 위원님께서 처음에 정책 소위를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빠지는 게 맞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외부위원 중에서 그런 분들이 1명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최종 의견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박경주 위원님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박경주 위원

- 저는 이것을 오늘 결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왜 이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경주 위원

- 막는 게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소통이 제대로 안 된 상태고요.

○박종관 위원장

- 어떤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었죠?

○이진희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소통이 안 된 사항은 오늘 공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의결해야 하는 부분은 정책 소위의 목표와 위상에 맞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위원 구성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이후에 보완이 필요한 위원 구성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합의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의결을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토론의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64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위원회 구성에서 어떤 위원들이 필요한가? 책임자에 대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르에 대한 참여, 장르와 관련해서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겠지만..... 유은선 위원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할 수 있겠으나, 소위가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은 맞는데요. 협의해서 나온 안건을 가지고 추후에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소위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얼마나 개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의견들을 수렴할 사람을 넣는 것이 좋은 원칙의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책 소위에서 논의하신 참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이 논의에서 혹시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오늘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의결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경 위원

- 동의합니다.

○이원재 위원

- 사실 카톡도 논의가 중단되었어요. 그 논의방식이 동의되지 않아서 그 이후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카톡방에서 의견을 나눈 것이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복잡하지 않은 게, 만약 6명이 적절하지 않다면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은선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드렸고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나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특정 장르의 예술가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논의의 대상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문학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의가 지금까지 위원회의 실패한 경험이라고 평가해 왔는데 그 논의를 또 하고 있는 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정확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역이 없다.” 사실 위원들 개인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소위의 역할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나중에 누가 밖에서 이것을 보고 “아르코의 정책 소위원회에는 서울 사람들만 들어갔다.” 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것을 제기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소위를 할 때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위원회가 결정되면 지역과 관련된 논의를 할 테이블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의 말씀을 받자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있고요. 보완지점은 어떤 것인가? 물론 오늘 의결을 하자는 말씀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논의의 수순 상을 그렇게 제안한 것이고요. 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있고 보완지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까지 의견을 요약해 보면 지역문제가 있고 포괄적으로 예술 장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논의를 해 나가죠. 외부위원 6인 추천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김선출 감사

-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소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민감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원회 성격은 위원회를 서포터 하는.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위원들은 좀 적게 들어가고 현장이나 밖에서 더 많이 들어가서 위원회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제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역 쪽은 1명이 보장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논의를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습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7월 3일 워크숍 결과에서 대략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가 다 되어 있고 그 논의에 참여를 하셔서,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위원들로 감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은 채널이 되어 의견이나 안건들을 만들어오는 기능이잖아요? 사실 소위원회 위원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략 논의가 되어 있고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위원 구성 문제인데요. 아까 지역이 빠져있다든지 장르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오늘 논의해서 의결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거기까지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안에 대한 존중이 있고요. 보완지점과 관련해서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장르문제는 논의해서 필요하시면 보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보완을 하셔야 하고 지역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2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3일 이후 단톡방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면회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진희 위원

- 예, 저는 동의합니다. 이원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장르를 기반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르적 안배보다는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충원되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고요. 지역에서 어떤 분이 참여하시면 좋을지는 소위 안에서 추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추천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셔도 좋겠지만 소위 안에서 추천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희경 위원

- 사무처 구성 안에 지역이 없었나요?

○이원재 위원

- 저도 추천할 분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추천하기가 뭐해서 지역문화진흥원의 분으로 그 분이 성남이나 여러 기관에서 지역정책들을 해 오셔서..... 그런데 단점도

있죠. 진흥원 기관이라는 것도 단점이기는 한데 추천을 했고요. 꼭 그 분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고요. 어쨌든 지역 관련해서 위원을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하여 오늘 결정을 하지 못 하면 소위를 구성한 다음에 소위 안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역을 담당하는 분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 유은선 위원

- 이것을 꼭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비, 연령, 지역을 항상 같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조기숙 위원 외에는 모두 70년대 80년대 생으로 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분이 10명 중에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령층이 50대 이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남성으로 장르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분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오늘 말고 추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부분에서 그런 분들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지역 부분에서 한 분 보장하고 어느 분으로 결정할 것인가는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그리고 8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유은선 위원

-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서면으로 해도 되죠. 어떻게 해야 할지 사무처에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소위에 위임을 해 주시고 소위에서 결정을 하고요.

○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적합한 분을 추가로 한 분 모시고 그분으로 정했다고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유은선 위원

- 예.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어느정도 의결안이 만들어진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회경 위원님께서 이원재 위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혹시 동의하시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조기숙 위원

- 단톡방에서는 공동위원장이 어떠냐고 하면서 박경주 위원과 이원재 위원이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소위원회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전고필 위원

- 이원재 위원이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도 좋은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동위원장 문제가 얘기가 되었으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사무처장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아니요. 저는 공동위원장 부분은 논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원회의 형식에서 공동 위원장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1인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책소위에서 공동위원장이 라는 것은.

○조기숙 위원

- 그 논의를 활발하게 한 것은 아닌데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위원장은 사실 도와주는 거잖아요. 너무 바쁘신데 너무 많은 일을 시키면 미안하니까 업무를 분담하자 라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위원장은 아니거든요. 도와주고 심부름을 하는 개념에서 두 분이 하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희 위원

- 충분히 논의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공동위원장이라는 것이 서로 돕는 개념이라면 공동 위원장 형태는 아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책 소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이 의견을 내 주시겠지만 빨리 잘 움직이게 하는 체계가 중요할 것 같고 정책 관련해서 총괄하는 역할들을 잘 해주시는 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원재 위원님이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공동위원장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원재 위원님이 너무 바쁘셨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둘이 하면 어떨까 했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원재 위원님께서 만약에 자리를 맡으신다면 그 것처럼 다른 일정에 밀려서 논의가 안 된다거나 소통이 안 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가 위원회를 한 다음에 장례를 치른 것 빼고 어떤 일정에 참여를 안 했나요? 코로나 TF 회의도 참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열심히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죄송한데요.

○박경주 위원

- 그런데 저는.

○이원재 위원

- 잠시만요. 의사발언 중입니다. 공개석상에서 제가 바쁘다고 빠져서 진행이 안 된 것이 있나요?
저는 불참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유은선 위원

-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박경주 위원

- 아니요.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위원장으로 하자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싸우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되시면 저희가 논의를 할 때 다른 급한 일이 생겨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당부입니다.

○조기숙 위원

-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장에 남자가 있기 때문에 남녀가 골고루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박경주 위원이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럴 때 위원장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원재 위원

-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소위원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저를 놓고 하는데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위원회 활동을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석상에서 저의 사적인 생활을 아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사적으로 아신다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불성실하거나 책임에 대해 당부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정책위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동위원장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외부위원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위원끼리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은 이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것은 상관없어요. 저는 이 논의를 이렇게 끌고 와서 정책 소위가 어떻게 힘을 받을 것인지? 저는 합리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는 제가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 경우에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러면 저도 한마디만.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추천하고 저한테 추천 권한을 행사하라고 하면 이런 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쉽게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얘기가 이렇게 된 것 같으면 잠시 정회를 하겠으니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의안번호 제 834호 정책혁신 소위원회 위원 구성(안)은 당초 구성(안)에서 내부위원 중에 조기숙 위원을 대신하여 유은선 위원님이 참여하시고,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위원을 1명 추가로 선임하는 것은 소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를 하실 때 결정하셔서 다음 위원회 때 보고하여 완성하는 수순으로 위임하고, 정책혁신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원재 위원으로 할까 합니다. 위원장 임명은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일괄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또 포괄적인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신 박경주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안을 의결할까 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고 모두 동의해 주셨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섯 번째 의결안건은 2020년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안건번호 제 835호 2020년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2020년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 공모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신청 및 결정 현황은 예산 2억 원 중에서 9건에 1억 7,200만 원이 지원 신청되었고 선정은 8건에 1억 5,2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28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모 추진계획(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의결하셨던 공모 추진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공공, 광역 기초 예술재단 및 기관이 전원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민간후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에 매칭 지원하던 것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광역재단 위주 그리고 기존 사업들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후원 매개 활동을 광역 및 기초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사업 공고를 하고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총 9건이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지원심의는 7월 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신아, 박승규, 유동균, 이정재, 정무성 등이 심의위원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심의기준은 ‘사업계획의 이해도 및 타당성’ 30%, ‘사업수행의 체계성과 전문성’ 40%, ‘사업 확장성’ 30%로 추진하였습니다.

심의 결과는 8건에 1억 5,2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요. 세부 지원 선정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9페이지의 붙임1입니다.

8건으로는 (재)김해문화의전당 2,000만 원, 대구문화재단 1,200만 원, 영등포문화재단 2,000만 원, 강동문화재단 2,000만 원,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2,000만 원,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 2,000만 원,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 2,000만 원,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 2,000만 원입니다.

총 결정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지원 결정내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기존에 받았던 단체인 ‘세종시 문화재단’ 외에 나머지 7건은 신규로 선정된 단체입니다.

그리고 광역은 대구와 세종 등 2곳이고요. 기초단체가 6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개선을 의도했던 신규 재단의 유입과 기초재단의 확대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립 위원

- 심의 총평을 살펴보면 심의위원들께서 코로나19 관련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악화될 경우 불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선정기관이 별도의 지침이나 대안을 통해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따로 있나요?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원 선정단체와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해서 온라인이라든지 대면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한 제 2안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소한 것인데요. 심사평에 ‘니즈’ 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장의 필요성” 이라고 바뀌도 될 말을 ‘니즈’ 라고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니즈’ 라는 말을 “현장의 요청” 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제승 문화예술후원센터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지원 사업 의결이니까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견은 없으시죠?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니즈’ 라는 용어를 “현장의 요청” 으로 수정해서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여섯 번째 의결안건인데요. 2020년도 제 3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입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안건번호 제 836호 2020년 제3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입니다.
1차 심의위원 후보단은 1,180명, 2차 심의위원 후보단은 17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 진행한 3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회의에서 선정위원 15인 중 12인과 사무처 직원이 참여하여 2차 재검토 대상을 포함하여 146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9명에 대한 심의위원 후보단 해촉 및 제한조치와 기타 재검토 대상을

포함하여 선정한 3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 내역입니다.

선정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선정위원회에서 적격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심의기준 합의 및 결정 사항으로 활동경력이 10년 미만이라도 최근 예술 활동이 활발하거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격으로 판단하였고 전문분야 또는 세부장르 조정 논의를 하여 더 적합한 분야로 조정하고 신청자가 선택한 전문분야 2개 중 1개만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분야를 이동하여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선정 결과입니다.

2차 재검토 대상 156명 중에 65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변경 현황은 전문분야 변경 1건, 상세장르 변경 10건, 지역 변경 1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79쪽의 붙임2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3차 접수인원 158명 중 81명을 선정하였고 선정 변경 현황은 75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야 내 상세장르 변경 1건입니다.

축제기획에서 지역문화로 변경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역은 82쪽의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중 9명에 대한 해촉 및 제한사유입니다.

자료 77쪽을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조치 기준을 1항부터 5항까지 마련하여 적용하였고 78쪽 표에 있는 9명에 대한 해촉 및 활동을 제한하였습니다.

해촉 2명, 정지 2명, 한시적 제한 5명입니다.

한시적 제한 3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고 1명은 공공기관 기관장 재임기간까지이며, 1명은 기록말소까지입니다.

향후 현재 시스템의 필수사항인 서약서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내용을 명시하고 체크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향후 선정위원회 회의결과를 예술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신규 심의위원 후보단을 대상으로 시스템에서 본인의 회원상태 확인 방법, 심의위원 직무수행지침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등록 시 본인의 경력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함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저는 추가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공공예술 사업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저희 후보단을 모집할 때 공공예술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분야로 공공예술을 넣자는 말씀이죠.

○박경주 위원

- 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 분야가 몇 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최근에 새로운 기획형 사업들이 생기는데 심의위원단 풀을 통해서 심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정기공모나 장르지원들은 주로 풀에 의존해서 현장의 전문성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Art & Tech'라든지 신규 사업이 생기는 것들은 별도의 심의위원 전문가 풀을 위촉해서 정책목표와 일치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풀 운영을 통해서 추천제 형태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게 저도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미술을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공공미술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공미술 사업을 하다가 공공예술로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풀을 공공미술로..... 그러니까 미술의 하위 단위로 넣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장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고 그 과정에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풀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그 의견을 드린 것은 장기적으로 갈 사업이니까 고민을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미술을 넣을지는 결정하지 않았고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일종의 장르 확산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성폭력 관련 혐의 제기' 라고 된 2인은 '정지' 라고 조치가 되어 있고요. 형이 확정되신 분은 '한시적 제한'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 하면 '형 확정' 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정지' 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이나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현재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정지'는 언제든지 다시 풀릴 수가 있는데 풀릴 경우에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밑의 '한시적 제한' 이라는 것은 법률상 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가 문제지만 한시적 제한은 기록말소처럼 명확하게.

○이원재 위원

- 예, 그것은 명확한 것 같아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그런데 성추행 관련은 혐의 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일단 정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렇죠. 마련을 해야지 안 그런 상태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기준들이 없어지고 형평성이 안 맞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지’ 라는 것은 정지가 되고 나서 기소가 되거나, 그것은 그나마 판단하기가 쉽고 최악의 경우가 뭐냐 하면, ‘정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법률적 판단을 안 하는 대상이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원칙과 규정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내부규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었던 것이 “보조금 같은 것을 수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교부하는 계약조건에 명기를 하는 등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범위와 몇 년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시안을 만들어서 논의 할 생각입니다.

○이진희 위원

-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면 ‘정지’ 조치가 된 위원들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건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진희 위원

-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원칙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문제겠네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고민을 할수록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추행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지 기간 등은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예, 취지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소송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법리 검토나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고필 위원

- 최근에 인력개발원에서 리스트가 와서 사람을 고르는 게 있었어요. 인력개발원에서 심의위원들을 고르다보니까 여성과 지역 분들이 현저하게 없더라고요. 사실 심의위원들의 뜻을 다발적으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름대로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도 하고 같이 추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르코의 인력 풀이 어떻게 보면 표준모델처럼 사용되고 있으니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마지막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국제교류부 지원사업 운영방침(안)입니다.
이 건은 황진수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안건번호 제 837호입니다.
안건명은 코로나19 관련 국제교류부 지원사업 운영 방침(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국제교류부 소관 지원사업의 취소 및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국제교류부 지원사업 운영 방침(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 31일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거의 7개월이 지난 지금 185개국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있고요. 지난 7월 8일에 확진자가 1,100만 명이었는데 오늘자로 1,530만 명이 확진되었고 사망자 역시 53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는 전세계 106개국이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도 56개국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예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절차를 마련해서 의결하여 국제사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기관협력형 사업과 공모 사업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기관협력형 사업 역시도 올해는 사업취소가 12건이 있고 변경이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7월과 8월이 넘어가면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공모사업 역시도 현재 사업포기는 5건이지만 사업변경으로는 기간조정 28건, 내용변경 24건입니다.

향후 이런 상황들이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처 방안을 세우고자 합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저희가 지난 3월에 국내사업은 나름대로 공연예술본부에서 방침을 세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업 같은 경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는 바람에 실제로 이동제한이 발생했을 때 예산변경 또는 예산항목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핸들링을 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도와서 하려고 합니다.

운영 방침 개요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제교류사업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물론 일시적이기는 하지만요. 지속가능한 대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사업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기간조정,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모든 사업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제조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사업에 한해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변동사항이 발생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신청서를 만들고 배포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단, 변경 범위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공연예술본부 지침을 준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준용하고 사업담당자가 검토하고 협의해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승인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제사업을 심의했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위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국제사업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사업들을 심사하셨던 분들이고요. 1차와 2차가 있었는데 장르별, 사업별 심의위원입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화상회의나 서면회의로 논의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건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격주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거는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 10조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9페이지에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코로나19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사무처에서 변경 범위를 검토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큰 폭이 아니고 위원회 사무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내부결재를 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이 중하거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듣고 불인정하는 경우 단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 보완요청해서 피드백을 해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수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의 사업으로 나뉘질 수 있습니다.

기관협력형 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지정형으로 해당 단체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6개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 단체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내년으로 연기하는 경우 사업변경신청서를 받아서 내년도로 연기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올해 하는 경우 사업기간이 크게 축소되거나 여러 가지로 변경이 크게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검토와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91페이지입니다.

많은 부분이 공모사업인데요. 1차가 131건이고 2차가 131건입니다. 그래서 262건의 공모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을 크게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는데 저희의 대부분 예산이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이렇게 제한이 되었을 때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자는 것이고요. 타 비목 전용을 인정하는 겁니다. 단, 사업이 원래 하고자 했던 사업과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심의위원회가 검토 및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주최 측에서 취소를 하는 경우 예술단체들의 피해상황으로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단체가 포기하겠다는 하는 경우에는 사업포기신청서 접수 및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차 년도로 사업이 연기되는 경우 예술단체나 개인을 동일한 사업으로 초청 또는 협업하겠다는 경우에는 차 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요. 이 역시 심의위원회 검토 및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최 측과 예술단체의 합의로 기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할 의사가 있는 경우 내용변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나온 예로 온라인 전시·포럼, 라이브스트리밍, 버추얼 레지던시 등입니다.

단, 사업내용변경이 기존 사업의 목적과 현저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불가한 것으로 하고요. 그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승인하는 안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의결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변경신청서를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첨부자료는 저희가 만든 변경신청서 양식과 현재 사무처 국제교류부에서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체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태림 위원

- 91페이지 마지막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혁신적 사업계획 수립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 내용 변경 기회를 제공할 때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업 추진의사가 있는 경우에 사업계획 변경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혁신적인 방법을 비대면 교류방식으로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한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환경 별로 어디가 제일 위험한지를 봤을 때 공연장이 제일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혁신적인 방법을 비대면방식이라고 한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사실 저희가 예시로 든 것이 비대면 방식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술가들이 더 잘 만들어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 혁신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단체들도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다양한 맥락에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시만 보면 비대면만 하라는 것 같으니까 예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희경 위원

- 이 사안은 열흘 전인가요? 상당히 일찍 자료를 보내 주셔서 의견들을 개인적으로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맞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찍 보내드렸고요. 몇 분의 위원님께서서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할까합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하는 위원들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의결안건을 모두 마치고 보고안건으로 들어갈 텐데요.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5. 보 고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10개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우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것만 간략한 보고를 해 주셔서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보고 중에서 꼭 필요한 보고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10개를 전부 다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뤄보자.”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 관련 보고가 있고 저희가 심의했던 것들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혁신 TF 운영계획(안)은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모니터링·평가 추진계획(안)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일반회계 추경 3차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 3가지 안건은 같이 보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리고 소위원회와 간담회 결과도 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기숙 위원

- 이주민예술가도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면 앞에 있는 심의 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공연예술 인력지원사업과 문화 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등 3가지는 축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순서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다면 보고를 받겠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보고안건 3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3차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추진(안)입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의 맥락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4월경에 문체부와 기재부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발표한 일자리 55만개 사업 안에 해당 사업들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시행주체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문체부 공연예술과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주체가 3,000명에 대한 것을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이 어렵다는 얘기를 전달했고요. 그 안에서 문체부가 주요 장르의 협·단체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현장의 의견수렴도 6월에서 7월 중에 2번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 세부 가이드를 만들면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통합지침 및 매뉴얼 등을 최종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목적에서 보시듯이 공연예술분야의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 잇따른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하고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단년도 사업으로 7월부터 12월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3차 추경의 결정 시기들을 고려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현장의 충분한 의견과 공모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9월부터 차기년도 1월까지 실질적인 인건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저희 위원회가 문체부를 설득해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하반기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술인력(창작, 기획, 경영, 행정, 국제교류, 무대기술 등)에 대한 일자리 3,00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국고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이고 지정교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업의 시행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체를 관리 감독하고 각 협·단체가 직접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총 288억이고요. 그 가운데 3,000명에 대한 5개월 인건비 18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270억. 그 다음에 협·단체가 공모, 선발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비 등이 18억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서 심사를 통해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를 최대한 지원하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박스 안을 보시면 “지원조건 완화” 반드시 공연을 개최하거나, 창작 작품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공연예술 활동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은 단체와 개인으로 나뉘었습니다. 따라서 공연실연인력(배우, 무용수, 안무가, 음악가, 성악가 등 예술인) 그리고 공연지원인력(무대예술·기술, 공연기획·행정, 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등 공연지원)까지 망라해서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설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은 추경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과 문체부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기획재정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는 회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들은 활동하는 시간들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서 30시간만 근무를 하도록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원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만 원씩 5개월이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30시간제를 결정하면 4대 보험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1인당 월 15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체계는 다음페이지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155쪽입니다.

문체부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저희에게 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냈고요. 저희 예술위원회는 사업전체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문체부 그리고 예술현장과 논의를 해 왔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사업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주요 협회가 공모 및 심사를 통해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도 협·단체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될 겁니다. 다만, 단체가 필요한 인력과 사업계획을 협회에 제안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인 명단수를 확정해서 실질적으로 채용할 인력을 뽑는 절차는 각 예술단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가 뽑게 되면 인력들을 다시 협회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사실 이것을 나눠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저희도 이런 사업들을 처음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고용인원수가 100명, 200명 등 대기업 단위가 되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채용인원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노무사들과 얘기하면서 사업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기재부 모두 만족할만한 디자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56쪽의 장르별 지원인력과 예산 배분에 대한 원칙으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수행기관으로는 연극은 연극협회, 뮤지컬은 뮤지컬협회, 음악은 음악협회, 국악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무용은 한국무용협회 등 5개 협·단체가 문체부를 통해서 선정된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협·단체나 공연실연인력과 공연지원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배분 과정에서 보시면 2019년도 공연예술실태를 참고해서 연극, 뮤지컬, 음악, 국악, 무용 분야의 단체수와 비율을 산정해서 지금 현재 각 협·단체에 지원할 인력과 예산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157쪽의 예산배분 현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이고요. 한국연극협회는 지원인력이 700명이고 지원 인건비가 63억 그리고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한국뮤지컬협회는 300명, 인건비가 27억, 운영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음악협회인데 실연자의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음악협회는 1,000명이고 전체 지원 인건비는 90억 그리고 운영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전통예술 쪽을 담당할 텐데요. 600명에 지원 인건비는 54억, 운영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무용협회는 40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36억, 운영비는 3억입니다.
 그래서 총 3,000명에 288억 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법적인 내용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단체에 사업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공모 및 선정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업 수행 및 점검 관리가 되는데 이때 인건비가 지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정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 사업에는 가장 큰 관건은 투명한 집행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그런 것을 제기할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 협·단체의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협회가 이익단체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전통예술진흥재단 같은 경우 자체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협회의 경우 일반단체나, 그러니까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수히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신청을 했을 때 보완책 그리고 자체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여기에 써 놓으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2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사는 송시경 본부장님과 계속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심사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협·단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위원회가 일정부분 만들어서 배포를 한 상황인데요. 예를 들자면 협·단체에서는 심의에 관여할 수 있는 인원들을 제한하고요.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예총과 민예총의 분들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정해 드렸고 그것을 어길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인데요. 이것들을 하기 위한 업체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무지를 입력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가서 “왔습니다.” 라고 입력을 한 후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 근무지 이탈로 정보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가들이 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고 다시 승인을 받는 절차로 가능합니다.
 사실 협·단체와 컨설팅을 받고 노무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정유란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교부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추진경과에 보면 업무 협의회의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문예위는 어느 타이밍부터 함께 논의를 했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4월부터 6월까지 처음부터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문체부와 기재부가 예산협의를 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 안에서 현장을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 지도 모르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연수단원 형태로 해서 젊은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단원 사업이나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지금 현재 예술단체들의 생사가 걸려 있고 존폐 여부가 걸려있는데 지금 연수단원을 준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관리할 것이냐?”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문체부와 논의했고 그 이후에 사업의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정유란 위원

- 그러면 수행주체를 각 협회로 하자는 아이디어는 문체부에서 나왔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맞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얘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예술단체들의 사업시행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은 추경이 끝나자마자 바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이고요. 사실 추경 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불용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있는 협·단체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문체부가 협·단체와 협의하면서 협·단체가 흔쾌히 수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려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커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총을 생각하지 않거나 혹은 자기 가입 단체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비슷한 자리에 협회의 분들이 오셨는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을 위원회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통상 그렇듯이 이쪽으로 미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한테 맡기는 것이죠.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예, 저희한테 말기는 것이죠. 그래도 위원회의 숙명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주 위원

- 장애인 의무부담을 선정할 때 몇 명 이상이면 고용하는 기준이 있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3.4%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센터 쪽으로 요청해서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박경주 위원

- 제가 여쭙보는 것은 저희가 소수자분들의 일자리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교육시켜서 그런 분들에게도 일자리가 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PS관련 시스템은 조금 반인권 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 추적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출결을 하고 벗어났을 때만 되는 시스템인데 모두 지워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인권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업체에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인권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권 침해로 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느 정도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보고인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지원심의 추진(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0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지원심의 추진(안)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19년도 정기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연수단원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그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인센티브제도 신설을 권고 받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연수단원의 정규직 전환을 제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연수단원을 통해서 지원받은 인력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인건비 50%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신설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연수단원지원사업을 통해서 쓰고 남은 잔액을 갖고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이 내역사업으로 확실하게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7년도부터 23명, 2018년 29명, 2019년 3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가장 애로점은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 경영평가지표 안에 일자리 지표에 정규직 전환 인원수가 있습니다. 매년 표준편차 방식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 가는데요. 올해는 41명입니다. 사실 정규직 전환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진경과를 보시면 2020년도 공모사업 추진계획에 해당 사업들이 포함되어서 수립되고 의결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연수단원지원사업이 종결되고 심의가 결정된 이후 남은 잔액이 2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년도에 연수단원으로 있었던 인력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사업개선의 가장 커다란 내용들이 최근 3개년 정도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올해 반영해서 올해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연수단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사업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의 내용은 고용전환 대상자의 월 임금 50%로 6개월간 보조를 하고요. 월 상한액은 100만 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현장과의 괴리가 뭐냐 하면, 연수단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건비를 반드시 실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의 예술인력이, 정규직이 되겠죠. 그들은 그것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괴리가 상당히 큼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 기존의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대체적으로 예술단체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잡아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은 정규직 전환 사실에 대한 적격/부적격 심사 형태로 되고요. 아마 이 사업 때문에 우리 문화일반 위원들께서는 심의위원들을 추천해 주셔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원심의 추진계획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노무 및 법률 전문가가 정규직으로 되어 있다는 노동계약서를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만약 조금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노무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고용계약서를 변경시켜주고 정규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접수현황은 42개 단체 2억 6,131만 4,930원이 접수되었고요. 신청단체 수는 총 42개 단체고 신청인원수는 50명입니다. 현재 이 지원범위를 갖고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61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기준은 정규직 전환여부, 근로계약이 적정성, 단체의 사업수행 실적을 갖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정 후 일부 고용계약서의 내용을 노무사들이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정한 계약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그 계약서를 통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약간의 조건부 지원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예술단체들이 노무계약 등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관계들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위원

- 우선 2가지가 궁금합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는..... 음악 쪽이라고 하면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수단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 쪽에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규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단체들 중에는 이미 비슷한 사업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있어서 받은 팀들이 있거든요. 총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변별성은 뒤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어느 팀 같은 경우 이것을 또 받게 되면 3~4명 정도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는데 이들 자체도 정규직의 의미가 없거든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사실 이 사업의 가장 모순과 같은 점인데요. 사실 이 사업의 시발점은 국공립예술단체에 대한 연수단원지원사업들이 문체부를 통해서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이 아마 제 기억으로 2015년도나 2016년도 경에 저희 예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요. 사실 문체부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있을 법하죠. 그런데 저희 예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예술단체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급격하게 국공립단체의 지원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매년 비율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들이 항상 국정감사에서 “민간예술단체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미 국가로부터 일정부분의 운영비나 관리를 지원 받고 있는 국공립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라는 의견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4, 7:3 그리고 2020년도 현재는 8:2로 민간인 80%, 국공립 20%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수단원 입장에서는 국공립 단체에 들어가기 많이 희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들을 할 때도 처음에는 민간예술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먼저 뽑히고 나면 거기에서 탈락한 인원이 민간예술단체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 ○○○○과 같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공모 형식을 달리해서

진행을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6월 정도가 돼야 채용이 끝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경에 98%, 99%가 채용이 되었습니다.

○유은선 위원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연수단원을 뽑을 때는 단원을 뽑는 것보다 굉장히 험거운 조건으로 뽑아요. 이것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국공립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그냥 단원으로 들어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굉장히 편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높습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정해진 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인지? 결국 이렇게 지원하려는 것도 추경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연속의 활성화와 고사되기 직전의 현장을 살리겠다는 것이잖아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이 사업은 추경 사업은 아닙니다.

○유은선 위원

- 예, 제가 볼 때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것을 굳이 민간단체들..... 국악 같은 경우 전부 다 민간단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그들 중에 하나를 정규직으로 해 주는 것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저희 연수단원을 통해서 선발되었던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유은선 위원

- 이미 그렇게 뽑아 와서 했을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여러 장치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이 사업들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어서 보고를 받고 같이 질의를 하시면 어떨까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16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단원지원사업에 대한 발제와 그 다음에 고용되어서 일하고 있는 연수단원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평가하는 수행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모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예술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하는 단체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주요 사업들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예산의 규모는 1억 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평가체계는 현장/서면평가 그 다음에 온라인 설문조사/FGI, 종합평가를 연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평가와 모니터링을 해야 할 단체가 196개 처에 참여인력 283명을 전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유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부분들을 항상 모니터링 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 사업이 예전에도 계속 있었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예술위에서 어느 정도 현장의 현안이 파악된다고 파악을 하시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실질적으로 예술전공자들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취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연수단원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연수단원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을 별도로 지원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전고필 위원

- 제가 예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에 직접 가 봤습니다. 유은선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을 받으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급여를 많이 가져가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눠야 해야하나 라며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인데 결국 우리가 더 노력해야할 수밖에 없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갤러리 파견 사업을 했을 때 페이백 받았던 사례가 있어서 그 사업이 폐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주의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은 예술단체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의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억제하면서, 사실 부정적 효과라고 하는 것도 그 생태계의 기초 체력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개선지점을 잡기가 쉽지는 않아서요. 저희도 모니터링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수급을 줄이는 것은 보편적인 루트에 따르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경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나 장을 마련해야지 사업 자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유은선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은 2억 1,700만 원이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정규직 전환 사업이요.

○유은선 위원

- 예. 그런데 지원신청액이 2억 6,000만 원 정도면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그런데 100%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은선 위원

- 가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금액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 단체를 모두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고용계약서 등을 확인해서 함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채우지 않고 안 뽑는 경우도 갖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이 사업은 정규직 고용이라는 고용계약서 자체가 완벽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유은선 위원

- 고용계약서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얼마든지 민간단체에서 만들 수가 있죠. 그게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해서 아무리 계약서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도 뻥히 보이는 팀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예산 2,100만 원 정도를 모두 나눠 준다는 것이 아니라 1억만 나가더라도 함량 미달인 팀을 걸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업의 취지가 길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사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부정수급이 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활동하던 친구에게페이백을 요구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백을 요구 받았던 방식들이 최근에는 ‘기부’ 방식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데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를 합니다. 100% 신고해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저희는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형사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최대 5배입니다.

○유은선 위원

-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걸러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 팀한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그냥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정량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알겠습니다. 심의 때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3건에 대하여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연수단원 장려금 지원문제, 모니터링·평가 추진계획까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를 간략하게 받겠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강운주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제 1차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1차 회의는 6월 23일에 예술가의 집에서 처음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내용은 성평등 소위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정도가 얘기 되었습니다.
지원사업 관련 통계 활용을 위한 기반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몇 개의 지원사업 중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을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고서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소위원회 논의를 통한 지원사업 제안의 타당성 여부,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위 자체 내부의 성평등 현황 조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84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몇 개의 사업취지를 살려서 저희 문예위 사업 중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문예지원사업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엔날레 감독이 공모되었을 때 같이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떤 분포가 있는지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다양성 보고서 준비는 성평등 관점에서 다양성 보고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원회 전체가 세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가 세팅되면 그때 가용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과 협업을 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를 통한 사업제안의 타당성 여부에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기본사업 제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평등 관점에서 예술위 자체 내부의 성평등 현황 조사 실시 여부인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향후에 분석의 필요성이나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여성 예술인들에 대한 또 다른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지역 순회 간담회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1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문예지발간지원사업 47건에 대해서 편찬위원회에 편집주간, 편집위원에 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당시에 감독의 성비와 실제로 참여한 위원들에 대한 성비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47건의 문예지발간사업을 분석해보니 약 37%가 여성편집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아동·청소년 문예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분석해 본 것이기 때문에 이후 3차 회의 말고 4차 성평등 소위원회를 할 때 3개년 정도로 확장해서 연령이나 발간이 된 것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지역과 수도권 등의 몇 가지 변수를 추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량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학지원부 정대훈 부장의 협조를 받아서 3차 회의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문예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188쪽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공론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원래 강운주 위원님이 계시면 여쭙보려고 했는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어 여쭙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기억에는 성평등 소위가 2주에 한번씩 모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시면서 중간에 위원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연속 3번을 해서 안 오면 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연속 2번 안 오신 분이 계시어요. 올해도 그것을 유지하실 건지 대해서 여쭙보려고 했는데요.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그런 말씀은 제가 직접 못 들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운영은 소위원장한테 위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이른바 젠더의 관점이라는 것이 지원의 정당성, 지원의 타당성 등의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요. 저희로서는 젠더 문제에 관해서는 성평등 지원 소위원회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전체적인 미션 범위 내에서 소위원회가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들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제가 그냥 운만 띄우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이신 강윤주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주민예술가 지원정책 개발 간담회 개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주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TF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렸었는데요. 원래는 간담회를 몇 번 개최해 보고 싶어서 안건을 올렸었고요. 1차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주민, 특히 예술인비자 관련된 지원단체나, 그러니까 예술인비자로 들어와 있는 것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가인권위에서 이주민예술가와 관련된 연구 사업을 했던 분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날 논의가 된 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예술가의 지원정책을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된 것은, 지금 문화적인 정책들 속에 한국에 이주해온 분들 중에서 창작을 하는 창작자들을 위한 사업이 전무하다는 데 대해서 공유가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이주민들.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향유의 대상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로서 나설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공유했습니다.

그러면 이주민예술가들이 받는 비자가 E6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에 보시면 E-6-1 비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순수예술과 관련된 비자고요. E-6-2가 가장 논란이 많이 되었던 비자인데요. 주로 유흥비자라고 해서 호텔의 음악을 연주하는 곳이나 춤을 추는 곳과 연결이 돼서 E-6-2 같은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한국에 있는 이주민예술가들 비자 E-6-1에 대한 연구는 E-6-2밖에 되어 있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 등으로 빠지는 경우는 E-6-2가 많은데요. 그런 쪽에만 지금까지 관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아무런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D-1비자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외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데요. 이것은 국제교류재단에서 확인증을 끊어주면 현지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술인비자와 관련해서 3가지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실제로 제가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E-6-1비자를 갖고 있는 분이나 F2비자(영주권)나 한국인 배우자로 있는 다양한 국적의 예술가들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분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온 미술 작가인데 한국대학에서 석사를 하셨고 예술가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정작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배우 등을 계약해 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찾아서 그 비자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신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E-6-1 예술가 비자로 와서 배우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주민이면서 한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신들이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저에게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들에 대한 처우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주민예술가에 대한 연구가 전무했고 이 분들이 얼마나 숫자이고 어떤 분야인지에 대한 리서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DB를 구축해서 조금 더 연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담회 식으로 하지 말고 이주민예술가들이 직접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하여 자기 작품을 소개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듣는 자리를 몇 차례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유은선 위원

- 저는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주민예술가가..... 물론 이것은 현안조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런 지원정책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현안이 굉장히 많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비중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지? 이미 간담회는 시작을 하셨고 잠깐 TF로 하실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박경주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알고 있는 범위 등이 통계로 나온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경주 위원

-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도 그 부분입니다. 파악이 전혀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술인 복지재단의 담당자분과 이미 한 달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도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한 이주민예술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면 해 주실 수 있다는 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추가되면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인복지 차원에서 범위 안에 들어올 텐데요. 저희 지원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주민 관련해서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 조사를 해보면 조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태파악을 하기 위한 절차나 방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려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경주 위원

- 그래서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분들이 있잖아요?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은선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예술위 차원에서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전효관 사무처장

- 저는 사실 이런 것은 문화부에서 정책과제로 넣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면.... 사실 정책을 수립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189쪽에 나와 있는 전문가 9인을 보니까 위원 풀 구성이 참 좋습니다. 양질의 위원 풀이 구성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생각해 볼만한 것이기는 한데요. 당장 우리 위원회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논의를 하시고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추가 질의를 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혁신 TF 운영 계획(안)으로 넘어가려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차기 회의를 정해야 하는데요. 유은선 위원님께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되겠느냐? 2주에 한번 모이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휴가 기간인 것이 문제입니다. 2주 후에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직원들 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면 21일 정도에 모이는 것은 어떨습니까? 일정들을 한번 봐 주시죠.

(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제 사업혁신 TF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혁신 TF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1차 구조개선 TF 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한번 드렸고요. 정책혁신 소위원회 준비 워크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오늘 올린 이유는 사업 활동 범위를 고려할 때 사업혁신 TF로 변경해서 지난 7월 13일 직원들의 인사를 겸직으로 발령했습니다.

193쪽입니다.

이 작업은 장르별 7기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현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술창작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진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또 사업운영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2022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으로는 TF가 13일부터 가동되고 있어서 사업부서 차원에서는 각 분야 별로 사업 환경 분석과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월요일에 전체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위원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해당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방향성을 논의한 다음에 9월 정도에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10월 정도에 보고서를 마련하고요.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에는 보고서를 만들고 문체부와 공동워크숍 때 제안하고 현장과의 의견수렴에 대한 목소리를 말하는 것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는 가동되어서 팀원들이 페이지는 만든 상태고요. 전체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일정을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질의가 있습니까?

○홍대립 위원

- 보고 받을 사항은 아니라서 마지막에 문의드리려 했는데요.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시각 분야 중간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갤러리의 ○씨가 계신데요. 이번에 뽑히신 분들 중에서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갤러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르코미술관 관장을 뽑을 때 면접에 들어오셨던 분은 면접대상자가 직원이라서 심의를 회피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회피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57차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2020년도 초반에 이미 시각예술 분야 6명에 대한 지원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1차 선정을 하면 300만 원씩 리서치 비용으로 지출하고요. 중간평가를 통해서 최종 전시관련 지원금만 지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1차 때는 심의회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난 사항이라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내역이나 상반기 동안 별도의 리서치를 통해서 본인의 작품을 만들 것에 대한 결과를.

○홍태림 위원

- 처음 6명을 뽑을 때는 심의회피를 하셨나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맞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런데 중간평가 때는 심의제척 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이 사업은 중간평가 때 탈락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과정 등만 심의를 통해서 지원금만 소폭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홍태림 위원

- 밖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직원이었던 분에 대해서 심의에 들어가는 게.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심의 결정 단계에서는 이미 심의회피를 했고요. 중간발표에서 당락이 결정되면 당연히 심의회피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 사업은 연구과정 등을 심도 있게 보고 예산의 결정내역을 통해서 결정되는 상황이라서요.

○홍태림 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어도 계속 똑같이 가는 것인가요?

○이희경 위원

- 지금 음악에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사제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래도 여기는 외부자문단 전문심의위원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희 심의위원 풀에 없는 분들 중에서 모시다보면 학교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는 배제가 당연히 되는데요. 왜냐 하면 모실 때 체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피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서 계속 멘토 역할을 하고 중간 발표에서 조언을 할 때에는 그분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이미 심사를 할 때는 회피가 다 되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지금 홍태림 위원님 말씀은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회경 위원

- 그러게요.

○박종관 위원장

-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전담심의위원회 회피제척과 관련된 일인데요. 이 부분이 사업진행의 특성상 회피나 제척에 해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것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적용되는 원칙을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홍태림 위원님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으면 추가 질문을 하십시오.

○홍태림 위원

-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답변이 되신 것으로 하고요. 2019년도 연간감사보고서 작성과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시간에 쫓겨서 보고를 할 내용이 아닌데요. 얼마나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김기용 감사실장

-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송구함이 있습니다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연간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결과보고이고 이것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와 문체부에도 이 자료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연간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문은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제 19조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 26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기준에 따라서 위원회 등기이사들께 그간의 감사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예술위원회 조직과 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공유해 드리고 차후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참조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 실시 개요입니다.

우선 2019년도 이전인 2018년도까지는 감사기구가 강화되지를 못했습니다. 인력도 2명, 3명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인력을 충원하고 감사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주로 공직강화 감사에 한정했다면 2018년부터 종합특정재무성과공유, 이것은 저희 감사 쪽에서 주로 다루는 용어들입니다. 감사를 강화해서 감사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부터 보조사업 부정수급 처리를 저희 감사실이 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도 공금횡령뿐만 아니라 최근 기재부나 정부에서 보조금 관리를 강화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2019년부터 부서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보조금 사업들, 부정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용어는 낫설 텐데요.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사가 종합감사와 특정재무성과공유 등으로 나뉘지고요. 상시 예방통제를 하는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종합감사는 총 5회를 실시했고요. 특정감사는 8회를 했고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으로 공관 12회로 서울에 있는 극장을 감사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는 없었고요. 문화부 감사가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감사 횟수가 전년 계획 대비 100% 달성을 하였습니다.

요약본의 감사결과 처분 현황입니다.

감사 종류별로 감사에서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변상’, ‘징계’, ‘시정’, ‘회수’, ‘주의’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17건의 감사를 통해서 변상은 없었고 징계가 초 5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정, 회수 건은 27억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는 30명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개선은 17건, 고발은 5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명은 저희 내부 직원이고 4명은 외부의 보조사업자입니다.

유형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저희 자회사에서 성희롱, 성추행, 갑질 등으로 1명을 파면 했습니다. 내부 직원 중에 1명이 횡령, 배임, 사기를 쳐서 1명을 파면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내부 행위를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대부분 완결은 되어 있고요. (주)한국문화진흥에서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 초에 했던 변상의 건이 있는데 미결상태입니다. 그것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예술위 직원도 1명 고발이 돼서 현재 검찰 조사가 끝났고요. 5억 정도는 받아내야 하고 별도의 징계부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 실효성을 검토한 다음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작년도에 감사를 했던 종류별 내용들입니다.

총 17건이고요. 그것은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부 감사가 2건인데요. 특정 예술체육위원 관리 실태라고 해서 제작년도에

국방예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국방위원회 쪽이 합동감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큰 제재사항은 없었는데요. 여러 가지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기관 권고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현재 이행을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은 요약본이고요. 말씀드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밖에 안 나가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처음으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평가를 10년 만에 처음 받았고요. 보조금 수급 관련해서 최대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고소·고발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기재부의 방침이 워낙 완강해서 고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서 사기죄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고발은 안 하려고 하지만 비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을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회의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도 말씀을 해 주시죠.

○김선출 감사

-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요. 2018년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우리 조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이런 감사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에서 감사부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B등급을 받았고요. 새로 신입 감사가 오시면 힘을 합해서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직원들의 격려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이희경 위원

- B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무감사를 보다보니까, 감사실에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술요원 얘기가 문체부에서 나왔다고 하기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한 번도 예술요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이것도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넘긴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장르 위원들이 살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예술요원들이 봉사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형식적으로 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요. 적극적으로 예술가들의 활동을 이왕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저희 활동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르가 무용과 음악 그리고 또 어디가

걸려있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무용, 음악, 전통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희경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죄송한데 그것은 나중에 정식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니까 다음번 회의에 정식 보고를 해 주시죠.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8월에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예, 알겠습니다.

○이원재 위원

- 질문을 하나 드리면요. 자료를 다 봤는데 21억은 어떤 건가요?

○김기용 감사실장

- 우선은 내부직원의 횡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관련해서 잘못 집행된 것이 73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금 위반으로 인해서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징계부가금 5배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5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원재 위원

- 규정에 5배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김기용 감사실장

- 원래 징계부가금은 공무원만 적용이 됩니다. 그 법령이 공무원법이거든요. 그런데 제작년에 권익위가 공공기관까지도 규정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민사입니다. 민사를 하기 전에 규정만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이원재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횡령 사건에 5배수 규정을 해서 민사를 한 판례가 있나요?

○김기용 감사실장

- 공무원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이런 경우가 있어요?

○김기용 감사실장

- 예. 그런데 비위가 다릅니다. 이번에 법령으로 해 보고 나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데 액수에 징계부가금을 포함시키니까요.

○김기용 감사실장

- 저희는 감사원에 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원재 위원

- 이렇게 보니까 그 돈을 회수해야 끝나는 자료로 보여서요.

○김기용 감사실장

- 용어를 말씀드리는데 ‘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래도 용어가 조금 낮설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처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대답이 되셨죠?

○이원재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10개의 보고를 모두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의사봉 3타)

6. 논 의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이것으로 사무처의 안건은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연이어서 예술인 성희롱 사태에 대한 입장발표와 흥태림 위원께서 발제하실 예정인 청년예술인의 예술위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의사항 첫 번째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예술위의 입장발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진희 위원, 강운주 위원, 흥태림 위원께서 특별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진희 위원께서 경과보고 겸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 입장문을 오늘 통과시키는 게 중요해서 입장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 대책위 쪽에서는 추가 피해에 대한 제보를 받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대책위 SNS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게 가장 최근의 상황입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입장(초안)에서 앞 페이지에 주로 작성된 내용은 문화예술계의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에 대한 구조와 예술가들이 창작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예술기관들의 지원 사업을 찾는 구조 속에서 'Y작가 성희롱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에 대한 것을 서두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Y작가가 예술위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술위가 미처 파악하지 못 했다고 하여도 Y작가가 안정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위 안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위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견제하는 못한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의 네 번째 단락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예방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써 서약서가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한계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방교육이나 2차 가해 금지라든가 배제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배제 규정이 수사 및 기소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사건들이 공론화가 되지 않거나 공론화 되어도 수사 및 기소까지는 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반영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예술위가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Y작가와 관련한 예술위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장 활동가들과 만나는 간담회가 지난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덧붙일 것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부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짐작이 되는 것이 2020년 올해 국제교류지원사업 관련해서 신문고에도 올라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금을 회수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위 내에 사건 관련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강화하는 방향과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읽으면서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처장님께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징계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번째 부분에 작성된 사전적 조치에 대한 것이고요. 사후적 조치에 대한 강화된 지침이나 매뉴얼이 필요하겠다는 내용들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위 지원 사업의 성별불평등 요소를 찾고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평등 소위가 주로 진행하고자 하는 올해의 계획과 연동된 내용입니다. 2018년 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성별불평등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성별 영향평가를 작년 성평등 소위가 진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 성평등 소위가 하고자 하는 불평등 요소를 개선하는 지원시스템 그리고 문화다양성 보고서, 경력단절 여성예술인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예술인지원사업 안에 불평등한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성폭력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예방적 조치로 완화시키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쨌든 전체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예술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관들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 있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들이 대책위 안에서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홍태림 위원님과 강윤주 위원님 그리고 제가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관련해서는 성평등 소위가 앞장서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술위 내에 예방적 대응 체계 관련한 것은 현장 단체들과 지난주에 만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현장단체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매뉴얼 등을 만드는 과정 안에 예술위원 중에 몇 명이 참여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했고 그 역할을 홍태림 위원님과 이진희 위원이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제안 설명 중에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전효관 사무처장

- 지난주에 잠깐 현장예술인연대 분들과 여성예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실 목적이 뭐냐 하면 “저희 내부규정에 보완점이 뭐냐?” 성희롱, 성폭행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인권위 등에서 해보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 규정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로 예술위연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제가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기관에서의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사실은 문제 제기라는 것은 싸움의 동력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는 것은 아니었다가 그 날 회의를 하면서 많이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성평등 소위가 갖고 문제의식의 질감과는 상당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규정을 검토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계약 과정을 강화하거나 절차를 보완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제가 여성부에 문의를 했는데 국가보조금을 갖고 이런 것을 만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나온 의견은 말하자면 교부 시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환수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을 넣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나중에 집행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안을 찾아서 보완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과 검토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초안을 만든다는 것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단체 같은 경우 저희들한테 지원신청을 할 때 행동강령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샘플을 수집해서 저희들이 표준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단체들한테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본인들의 행동강령을 제출하게 하든지 하고요. 예술가들에게 인권침해나 성폭력 등이 일어났을 때 행동매뉴얼 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같이 만들어나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안을 만들어서 현장과 같이 지속적으로 그 매뉴얼과 행동강령을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원금 환수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답변 내용은.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아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검토하시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 예, Y작가의 참여 여부를 확인했으며 현재는 제외를 하였다는 회신을 받았고요. 지원사업에 대해서 Y작가가 관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지원사업 회수는 연결되지 않은 내용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여성예술인연대에서 문제 삼는 것은 특정 단체의 문화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라서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듣다보면,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 문예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가 있으면 그 출판사는 전부 다 지원을 안 해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의 문제 제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속해 있던 단체들이 갖고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규정상 어떻게 세우냐는 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지금 사무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수사할 수는 있는 수사권은 없지만 지원을 할 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아니고요. 그래서 4월 20일에 직접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냈던 교부신청서나 변경교부신청서를 봐서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치는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소명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황입니다. 공문에 대한 답변이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릴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가의 작품이..... 일본에서 도쿄도에 현대미술관에서 700만 원을 받고 Y작가를 포함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요?

○이진희 위원

-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에 대해서 “최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것은 어떻게 하고 현재는 어떻게 하며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일부 참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뭐냐 하면 자기들 실수로, 예를 들어서 실제로 회의는 4월 20일날 미술관에서 Y작가를 뺐다고 하고, 신청서에는 “Ctrl+C”, “Ctrl+V”를 해서 잘못 넣었다는 식으로 해서 오면 진위여부에 대해서도 참..... 어쨌거나 복잡한 상황이니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로서는 그런 사안들이 재발되거나 이미 진행된 것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했을 때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느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이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은 교부 받은 3개 사업의 처리에 대해서 입장문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이원재 위원

- 일단 연좌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연좌제를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협회나 단체, 팀에 연좌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은 서야 하는 것이고요. 밖에다가 “연동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져라.” 이런 것과 공공기관에서 개인과 타인을 엮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다른 것이

죠.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폭력 등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속한 그룹이나 단체를 비판할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문단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진행형이고 이 작업에 Y작가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조건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탐정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회신과 근거를 받고..... 정확하게 아닌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도 문제 제기를 하겠죠. 저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그 문장을 덜어내고요. 저는 성명서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빨리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되, 더 복잡한 토론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 문단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박경주 위원

- 그냥 “검토하고 있다.”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이원재 위원

- 피해자 측에서 반대로 보면 되게 모호해서요.

○박경주 위원

- 우리가 안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검토 중’이라는 정도는 나가도 될 것 같거든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장이라는 것은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위원회의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서 판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런데 저는 말씀하신 것은 맞지만 결국 어떤 이름으로 나가든 밖에서는 위원회에서 나온 게 되잖아요? 물론 형식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하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위원회의 입장이 될 것이고요. 제 생각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나가면 괜히 애매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단을 빼고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검토하고 보완해서 내는 것보다 오늘 어느 정도 의결이 되면 위임을 해서 월요일 정도에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홍태림 위원

- 제가 이것을 같이 만들면서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두 번째 장의 마지막 부분이요. “2020년 1차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은 사실관계를 계속 검토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그냥 빼버리는 것이 좋은지 남겨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이 문장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읽히고 저렇게도 읽히는 부분이라서요. 차라리 명료하게 되지 않으면 빼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희경 위원

- 빼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계속해서 의견을 들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저는 사실 그냥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위원회로 나갈 것이면, “성평등 소위원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별 영향평가가.....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성별로 현황이 어떤가를 알아보는 것을 성별 영향평가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성별 영향평가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평등 소위에서 지원사업의 남녀비율을 정하고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문제라고 여성계에 서는 읽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언제 시행을 하나?” 이렇게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정창호 정책혁신부장

-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문맥의 흐름을 처음 읽었을 때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와 사후적 조치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인데요. 양성평등 문제가 세 번째로 오니까 안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서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논의, 예방적 조치로써의 우리 위원회 입장을 기술하시면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앞으로 예술인 성평등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시작되잖아요. ‘하나’, ‘둘’은 성희롱, 성평등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페이지 ‘셋’은 양성평등 문제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예술위는 양성평등 이야기가 없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세 번째 들어갈 위치와 내용 자체가 다른 거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 ‘둘’, ‘넷’의 내용이 앞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런 정도의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상 네 번째로 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소위원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이 논의에서의 핵심 부분은 경력단절 여성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까지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진희 위원

- 맞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성차별적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3번의 내용이니깐요. 사실 4개의 후속대책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Y작가 관련된 것들을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다.” 두 번째, “예술위 안에서 사전·사후적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세 번째, “예술위 전체 지원 사업으로 확장해서 불평등한 요소들을 줄여나가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 네 번째, “이것은 예술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의 문제이니 문체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술위가 앞장서서 문화예술계 그리고 여성폭력지원 관련한 기관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하여 문체부가 제대로 책임지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깃발을 꽂고 같이 이런 대책들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점진적인 구조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고민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연좌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연좌제처럼 해당하는 기관들, 가해단체로 낙인을 찍고 모든 지원금에 대한 회수나 징계·처벌을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엄격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 작가가 소속된 단체에 내릴 때 엄격한 기준과 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와 맞붙어 있는 부분이나 하면, 가해 방조와 방관에 대한 부분과 2차 가해와 피해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여서 우리가 징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2차 가해 혹은 성폭력 발생에 대한 방조와 방관에 대해서 목인한 정황들이 진상조사에서 드러났을 때, 또 2차 가해를 해당 단체에서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을 때 해당 단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징계가 필요한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오픈돼서 얘기할 수 없는 다양한 실체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에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Y작가가 ○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작업한 내용들이 포함된 전시를 하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고 난 이후의 시점에 Y작가를 제명 혹은 퇴출했다고 해도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Y작가가 참여한 작품이었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련성을, 그러니까 4월에 활동을 정리했다고 해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런데 1번 2차 가해에 대한 여부는 사실 따져볼 수 있는 실체적 자료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작년 11월에 이 건에 대해서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조사서 같은 게 있을 것이고요. 예술위에서 국제교류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와 선정된 것은 10월에서 11월 사이입니다.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조사한 시기가 11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해당 단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이 사건을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방조나 방관에 대한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사실은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들을 정말 피해자를 옹호하자라는 근거로 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연좌제는 당연히 안 된다. 가해자 단체에 대한 일방적 낙인은 문제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2차 가해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차 가해와 관련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이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물론 개인과 단체의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지원금을 취소시킬 수 있는, 지금은 분명해 진다고 하더라도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면 이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칙들은 동의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공모나 2차 가해도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서울문화재단 그 부분은 어디에서 논리가 깨지느냐 하면, 예를 들면 가해자한테 공지를 안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비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성고충위원회에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많이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서울문화재단의 성고충위원 3인과 대표 외에는 아무 직원도 몰랐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한테도 공지된 적이 없고 조사라는 것은 서울문화재단 안에서 조사한 것이 서울시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쪽에서 “우리한테 공지된 바가 없다.” 물론 정황상 “알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은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결국 따져봐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트너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어떤 근거가 있고 2차 가해가 등장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밝힐 수 있는 사항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기본적인 접근을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고 판단하려면 시간이 흘러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애매한 조항을 남기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일단 입장을 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내는 방향의 원칙에 대한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책임 있게 진행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밝혀지면 그것에 대해 조치한 결과를 내면 되는데요. 환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들에서 성명을 냈는데 모든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기본입장이 잘 짜여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발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결정을 하려면 의견 조율이 필연적인데요.

○이시백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Y작가에 대해서 예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글의 내용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심각하게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성찰한다.”

세 번째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한다.”

이 정도면 열개가 이 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권한을 가진 이들이 권위적 남성적 문화가 이어졌다.” 라고 명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일부 남성문화 추종자들의 사례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지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직결된다고 규정하는 것도 일방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완곡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한 배경에는 분명히 예술위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도 어디까지 예술위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저 자체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발생한 배경에 예술위의 책임도 없지 않습니다.” 라고 완화해서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Y작가에 대해서 예술위가 모든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맥락상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여기에 근거로 제시한 것이 조금 오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 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고 성별 영향평가 시행을 검토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여성작가들이나 여성창작자들에게 내가 선정될 실력이 되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분석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얻어내기 이전에는 사례로 제시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선정될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여성이라는 성적 젠더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강력한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사례로 규탄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심사위원들의 심의과정에서 경쟁이라든가 작품성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남자들이 뛰어난 것이 인정되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은 좀 확인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사례로 제시된 것은 “검토하겠다.”라는 문구로 마치기는 했지만 근거 사례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진희 위원님, 홍태림 위원님 혹시 지금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정이 가능하신가요?

○홍태림 위원

- 예.

○이원재 위원

-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입장문을 내는 이유가 다른 것보다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계 구조에 대한 공통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요.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진희 위원님이 톤을 많이 다운시켰을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구 수정의 기간도 꽤 오랫동안 가졌고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는 알지만 지금의 맥락으로 봤을 때 “없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굳이 큰 오해가 없다면 그것은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판단하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저는 자구 수정을 위임했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성별 영향평가는 제도잖아요? 그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액션플랜이 있어야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성별 영향평가를 문화부가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우리 기관이 하는 것은.... 성별 영향평가는 이런 것입니다. 국가가 5,000억을 이런 사업에 쓰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를 사전에 집계해서 성별 균형을 취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별 차별이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그 정도면 되는데요. 그 수위를 넘어가니까요.

○이진희 위원

-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는데요. 굳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성평등 소위에서 진행하고 있던 것을 확대해서 예술위 안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성평 영향평가와 같은 노력들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문체부의 역할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위가 하나의 롤모델로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사업에 한해서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을까를 성평등 소위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와닿아서 쓴 것인데요. 한편으로 와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루뭉술하기도 하고 예술위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그 부분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진희 위원

- 예,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지는 성평등 소위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상의 하셨던 분들이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나온 안들을 읽다보면 취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만약 피해여성이라면 상당히 공중에 뜬 얘기들이 많아요. “강화를 하겠다.”, “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충을 이해합니다. 당장은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에 경력단절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여성인권으로 대피하지 않았나? 예를 들자면 Y작가에 의해서 드러났던 허점이 있어요. 선정된 프로젝트에 심의는 냉정하고 공정하게 한 것으로 예술위가 끝내버린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진행했는가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를 검증하는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모니터링이나 중간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작자들에게 성평등이나 성추행 사례에 대해서 검증하는 제도를

넣겠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장치를 한 두가지라도 구체화 시켜서 제시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진희 위원

- 예, 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게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그것은 지금 결정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강화’라고 썼습니다. 다만, 현장단체들과 만나서 조금 더 추가하는 게 명확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2020년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제일 분노하는 상황일 것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구를 추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어쨌든 위원님들과 전반적으로 논의가 된 부분이고요. 일단 이 문장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조정하거나 빼는 방향으로 하되 국제교류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고 개입해서 회수든 징계든 어떤 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협력하겠다.”,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징계를 하려면 서약서를 기준으로 해도 징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입해서 징계나 절차 등, 아니면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이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예술위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징계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문제 구조를 파악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인정하고 대책까지 세우는 방안을 열어놓고 우리가 검토한다는 것까지 합의가 되면 자구에 대해서 일단은 드러내고 확인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수순을 정해야 할 텐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할까요? 아니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위원 일동으로 할까요?

○홍태림 위원

- 7기 예술위원회 위원 일동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런데 위원회 위원 일동은 있지만 7기 위원회 일동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왜냐 하면 저까지도 7기인데요. 6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유은선 위원

- 내용 중에 세 번째를 보면 “이에 따라서 예술위 성평등 소위원회는”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원회로 하는 것도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발표 주체도 정해졌고요.

○이원재 위원

- 그것은 위원회에서 전체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위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서요.

○유은선 위원

- 그러면 성평등 소위원회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저도 성평등 소위원회 문제는 저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런 얘기를 여기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지금 유은선 위원님의 의견부터 정리를 하면 소위원회도 입장을 냅니다. 과거에 입장을 발표했던 경험도 있고요.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유은선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도 성평등 소위원회를 굳이 넣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술위원회의 이름으로 하려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제 생각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 문장에서 소위를 빼고 예술위가 주최하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소위원회도 예술위인데요.

○유은선 위원

- 그래요도요.

○박종관 위원장

- 저는 이원재 위원님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평등 소위원회로 하지 말고 예술위원회라고 쓰면 되잖아요.

○이시백 위원

- 몇 기 위원 일동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은 뭐가 문제죠?

○박종관 위원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체로서의 위원회와 기관전체를 의미하는 것의 차이가 있지요.

○이시백 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하면 어떤가요?

○유은선 위원

- 그것은 직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어서요.

○전효관 사무처장

-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은 기관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시백 위원

- 그렇죠.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니까 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서요. 그냥 위원회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공람을 해 보시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저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재발되었을 때 성명서에 나왔던 것에 대한 이행을 위해 분명한 권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해서.

○박종관 위원장

- 적당한 시기가 되면 논의되고 적시된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도 내야하고, 의견을 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무진과도 적절하게 협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정리를 해서 사무처에 넘겨주시겠어요?

○이진희 위원

- 강운주 위원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요. 상의를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초에 결정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이진희 위원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제교류지원에 대해서 제가 2가지 근거를 들어서 강하게 주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가해자를 제명하거나 “우리 회원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꼬리자르기를 하는 사례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면서 잘 처리할 수 있을지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소위원회 같은 작은 단위의 명칭을 쓰지 않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한다. 성명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정리가 되었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마지막 토론안건인 청년예술인의 예술위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홍태림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발제를 하시겠습니까.

○홍태림 위원

- 5월 TF를 할 때 운만 떴고 진행시키거나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구체화된 자리를 만들고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준비한 토론자료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토론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따져보고 계획을 잡았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능 여부까지 포함해서 하는 방식까지도 열린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술위의 외부 상황이나 내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 2015년에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요. 서울시 청년정책 네트워크와 청년시민의회는 500억 규모의 청년자율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서 기본법 5조 4항에서는 청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국가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총리실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측에서 예술위 위원 및 예술위 소위원회의 학생, 청년 쿼터를 요구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예술위 외부 상황인데 다음은 내부 상황입니다.

2020년 5월에 열린 7기 위원회 워크숍에서 간단한 얘기만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2항 3조에 보면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고 소위원회 규정 6조 2항에는 “소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소위원의 경험과 학식 전문성을 고려하되, 남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20~30대 위원은 2019년까지 없었다가 7기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30대 위원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풀에서 심의위원 추천을 받으면서 보니까 20대는 아무도 없고 30대는 전체에서 1.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3차 심의위원 후보단 심의부터는

전문경력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 후보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공모로 소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현장 프로그램인데 현재 공모자격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1과 2를 보시면 7기 예술위에서도 여전히 각 의사결정 기구의 평균 나이가 52세에서 51세로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7기 위원회 소위원회 중에 현재 구성이 완료된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가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위원들이 모두 68~77년생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30세대 예술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준으로 청년예술인만을 위해 운영 중인 지원사업을 헤아려 봤는데 이게 다 찾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청년 관련 예산은 1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예술위 내·외부 상황을 살펴본 것이고요. 4쪽을 보시면 2030세대가 예술위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런 것에 대한 구조 개선에 대하여 위원회의 동의가 있다면 올해부터 청년예술 사업에 대한 참여를 목표로,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이것을 할 당의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청년예술사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를 목표로 TF를 먼저 가동해서 필요한 것들을 쌓아 나가든가 혹은 2020년도 말에 2022년도 예산을 잡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급박하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청년예술 TF를 스킵하고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소위원회 운영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혁신부에서 소위원회를 담당하고 있고 각종 TF도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TF와 소위원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그렇지만 예술위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아르코비전 2030에서도 도전과 변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도전과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토론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회경 위원

-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토론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현재 현장소통 소위와 정책혁신 소위, 성평등 소위가 있는데 성평등 소위는 20~30대를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현장소통 소위나 정책 소위에도 저는 30대를 추천했어요. 이렇게 소위에서 보강하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제를 공론화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토론자료를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실질적으로 2020년 12월 정도까지 설계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진행과정을 보면 절차를 많이 거쳐서 모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사업과 결합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사업혁신 TF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TF에서 청년 관련된 부분을 간담회 형태로 해서 모아 보시고요.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 의견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모태로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고요. 이것의 목표를 2022년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것보다 장기적으로 몇 차례 모임을 하면서 “예술위에서 과연 청년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으로 예술의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있는 50대 이상의 위원들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20~30대와 40~50대의 감각이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 감각을 예술위에서 흡수하는 것은 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문제라면 TF가 됐든 뭐가 됐든 차분히 그런 것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주 위원

- 저희가 TF 준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흥태팀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었고 자료가 있어서 그것의 연장선으로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방법적인 면에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은선 위원

- 개인적으로 이회경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 하면 저희가 정책 소위나 현장 소위도 마찬가지로 계속 청년층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하는 것보다는 사업개선 TF가 있으니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상설로 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요약해 보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요. 이것을 빨리 시행시켜서 제도에 반영해야 하는 가장 빠른 길을 찾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가지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흥태팀 위원

-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 관련해서는 모두 열어두고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요. 사실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얘기할 것이면 뒤에 복잡하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혁신 TF도 있고 정책혁신 소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만든 것은 장기적으로 청년예술인이 당사자로서 청년예술과 관련된 예산에 관하여 참여대상자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혁신 TF나 기존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넓힐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원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원재 위원

-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TF와 소위에 대해서 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TF를 짜는 것이고요. 지금 청년 관련해서 핵심은 당사자책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버닝이 중요하고 사업계획은 일부의 미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거버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버닝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TF를 제안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데 결합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론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대의명분 쪽으로 쉽게 “청년들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아르코나 한국의 예술 환경에서 20대 심사 평가를 받는 사업들은 상당한 맹점이 있어요. 우리끼리는 혁신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요. 그 다음에 특히 위원회를 만드는 게, 그런 주체 당사자로 위원회를 계속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목적을 반영하는 모델에 대한 논의를 TF를 통해서 소위를 제안하시거나 위원회 운영모델을 제안하는 절차를 밟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하고요. 사업제안 등은 거기에서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제가 잠깐만 덧붙이면, 저는 사실 TF가 되어도 좋고 소위가 되어도 좋고 지금은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 큼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년 쪽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예술위의 사업구조를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를 만들든 TF를 만들든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 한 두 차례 간담회도 좋고 의견으로는 “일부 지역에도 한번 가보자” 그러면 가서 논의를 하고 활동보고서 형태로 작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7.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논의의 자리니까 논의로써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는 오늘 굳이 하지 말고 제도개선의 문제와 조직으로 남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 싶고요. 후속 논의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논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합니다. 한번 회의를 시작하면 5시간이 넘도록 회의를 하는 것도 송구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위원님들께 과도하게 맡기게 되는 것도 송구합니다. 특히 오늘 정책혁신 소위 구성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렇게 의욕이 넘치고 예술위원회의 일을 찾아서 해 주시는데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모습에 대해 위원회가 잘 받아야 하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제 283차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9시 16분 회의 종료)

